

학교법인 호산교육재단

2021학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

구 분	이 사	감 사
임원정수	8인	2인
재적임원	8인	2인
참석임원	6인	인

1. 일 시 : 2021년 05월 20일 18:00(회의소집 통보일 : 2021년 05월 10일)

2. 장 소 : 법인회의실

3. 임원 출 · 결사항

◦ 참석임원

- 이사(6인) : 김원경, 김인수, 서희돈, 우영훈, 정진오, 김재현

◦ 결석임원

- 이사(2인) : 안우신, 박윤찬

4. 안건

①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간 연장 신청(안) 심의

② 호산대학교 2022학년도 학과 통합 · 폐지 및 대학입학정원 조정(안) 심의

③ 정동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협의(안) 심의

④ 법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서 수정(안) 심의

⑤ 기타안건 심의

5. 회의내용

1) 이사장(김원경 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 : 금일 본회를 개최함에 있어 재적이사 8명 중 6명이 참석하였으므로 법인 정관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개회를 선언합니다.

김 원 경	김 인 수	서 희 돈
김원경	김인수	서희돈

- 2) 의장 : 바쁘신 중에도 본 회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
금일 의안 ⑤건을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.
- 3) 의장 : 먼저 의안 제①호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간 연장 신청(안) 심의 의견을 상정하고 법인사무국장(박윤환)에게 내용설명을 요청합니다.
- 4) 법인사무국장(박윤환) :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-4714호(2020. 05. 25)로 학교법인 호산교육재단(호산대학교)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(허가일로부터 12개월 이내)를 교육부로부터 접수받은 유인물을 근거하여 처분 허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.(회의자료 유인물 내용 ①과 같이 설명하다.)
- 5) 의장 : 의안 제①호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간 연장 신청(안) 심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.
- 6) 이사(김인수) : 유인물과 제안설명 및 회의자료를 검토한 바, 법인에서 토지매각에 대한 의지와 노력을 기울였으나 처분 허가 기간 내 일부 토지를 처분하지 못 할 것이 예상되어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간 연장 신청하는 원안에 동의합니다.
- 7) 이사(우영훈) : 김인수 이사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.
- 8) 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.(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.)
- 9) 의장 : 의안 제①호인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 기간 연장 신청(안)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- 10) 의장 : 다음은 의안 제②호인 호산대학교 2022학년도 학과 통합 · 폐지 및 대학입학정원 조정(안) 심의 의견을 상정하고 법인사무국장에게 내용설명을 요청하다.
- 11) 법인사무국장(박윤환) : 기획처-163호(2021. 05. 07)로 2022학년도 학과 통합 · 폐지 및 대학입학정원 조정(안) 심의 제청을 호산대학교 총장으로부터

김 원 경	김 인 수	서 희 돈
김원경	김인수	서희돈

접수받은 유인물을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(회의자료 유인물 내용 ②와 같이 설명하다.)

12) 의장 : 의안 제②호인 호산대학교 2022학년도 학과 통합·폐지 및 대학입학정원 조정(안) 심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.

13) 이사(서희돈) : 호산대학교 총장으로부터 2022학년도 학과 통합·폐지 및 대학입학정원 조정(안) 심의 제청 받은 유인물과 회의자료를 검토한 바,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.

14) 이사(정진오) : 서희돈 이사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.

15) 참석이사 전원 삼청하다.(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.)

16) 의장 : 의안 제②호인 호산대학교 2022학년도 학과 통합·폐지 및 대학입학정원 조정(안)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17) 의장 : 다음은 의안 제③호인 정동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협의(안) 심의 의견을 상정하고 법인사무국장에게 내용설명을 요청하다.

18) 법인사무국장(박윤환) :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(회의자료 유인물 내용 ③와 같이 설명하다.)

19) 의장 : 의안 제③호인 정동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협의(안) 심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.

20) 이사(김인수) : 회의자료 검토와 내용설명에 대해 관할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였고,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정동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협의(안) 원안에 동의합니다.

21) 이사(정진오) : 김인수 이사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.

22) 참석이사 전원 삼청하다.(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.)

23) 의장 : 의안 제③호인 정동고등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협의(안) 심의 의견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김 원 경	김 인 수	서 희 돈
기 1 원 경	金 仁 수	서 희 돈

24) 의장 : 다음은 의안 제④호인 법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서 수정(안) 심의 의견을 상정하고 법인사무국장에게 내용설명을 요청하다.

25) 법인사무국장(박윤환) :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근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(회의자료 유인물 내용 ④와 같이 설명하다.)

26) 의장 : 의안 제④호인 법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서 수정(안) 심의 의견에 대해 검토 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.

27) 이사(서희돈) : 회의자료 검토와 내용설명에 대해 특별한 이의사항이 없으므로 법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서 수정(안) 원안에 동의합니다.

28) 이사(우영훈) : 서희돈 이사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.

29) 참석이사 전원 삼청하다.(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.)

30) 의장 : 의안 제④호인 법인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서 수정(안) 심의 의견은 원안대로 만장일치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

31) 의장 : 다음은 의안 제⑤호인 기타토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. 토의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.(참석이사 전원 기타의견 없다고 함.)

32) 이사(우영훈) : 기타토의 사항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는 것에 동의합니다.(참석이사 전원 박수로 찬성하다.)

33) 의장 : 사립학교법 제18조의2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 제2항과 관련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간서명하는 번잡을 고려하여 간서명할 대표자를 본인 및 김인수 이사님과 서희돈 이사님을 간서명 대표자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34) 이사(정진오) : 간서명 대표자로 김원경 이사장님과 김인수 이사님, 서희돈 이사님을 선임하는데 동의합니다.

35) 이사(우영훈) : 정진오 이사님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.

36) 참석이사 전원 삼청하다.(참석이사 전원 찬성하다.)

김 원 경	김 인 수	서 희 돈
김원경	김인수	서희돈

37) 의장 : 금일 부의 안건 ⑤건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 드리며, 폐회를 선언하다. 끝.

- 참석 이사기명 날인 -

이사장 김원경

김원경

이사김인수

金仁洙

이사서희돈

서희돈

이사정진오

정진오

이사우영훈

우영훈

이사김재현

김재현

- 이상 -